

##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	승인일	시행일	승인권자
제정	2016.10.25	2016.11.08	대표이사
개정	2020.06.01	2020.06.01	대표이사
개정	2021.07.01	2021.07.01	대표이사
개정	2022.02.23	2022.02.23	대표이사
개정	2026.05.15	2025.05.15	대표이사

---

##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### 제1조 (목적)

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지침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)

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지침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및 그 외 업무관련 법규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따른다.

### 제3조 (수수료의 구분)

이 지침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#### 1. 보수

-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으로서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, 운용보수는 해당 기간 동안 받는 일정한 금전을, 성과보수는 법 제86조, 동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 - 나. 판매회사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 - 다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 -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 - 마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-

2. 수수료

- 가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으로서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로 구분한다.
- 나. 환매수수료 : 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안정성과 환매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다.
- 다. 투자자문수수료(기본수수료) : 투자자가 투자자문계약서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문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.
- 라. 투자일임수수료(기본수수료) :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투자일임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.
- 마. 성과수수료 : 투자자가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 따라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 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 방식에 따라 투자자문회사 또는 투자일임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.

제4조 (수수료의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행위,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.
  - ③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,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  - ④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- 1. 성과보수는 법 제86조, 동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 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해당 투자설명서(투자제안서 포함)와 집합투자계약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.
    - 2.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는 동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사모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  - 3.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령함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수령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.
  - ⑤ 그 밖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 자산 규모 및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고객과 협의한 별도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.
-

### 제5조 (수수료의 부과절차)

- ① 회사는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또는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, 그 부과 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- ③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에서 정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의 기본수수료 및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는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 특히, 법 제98조의2 제2항에 따라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(성과수수료 계산방법 포함), 수수료 계산기간 및 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- ⑤ 회사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의 변경 후에 인상하여야 한다.
- ⑥ 회사의 신상품을 협의하고 검토하는 위원회(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)에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또는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- ⑦ 회사는 각 집합투자규약 또는 계약으로 정한 보수 또는 수수료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
### 제6조 (설명의무)

회사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### 제6-2조(수수료의 고지)

- ①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일임수수료(기본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를 포함한)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시기, 금액 등 투자일임수수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자문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시기, 금
-

액 등 투자자문수수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7조 (투자광고)**

- ① 회사는 투자광고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.
- ②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,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**제8조 (공시 및 통보)**

- ③ 회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이 지침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.

**제9조 (제정 및 개정)**

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.

**부 칙**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6년11월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1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2월2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6년5월15일부터 시행한다.

---